㈜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用-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

※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가액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조세조약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세액 및 납세 절차 등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유의사항]

-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 세무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1-628-6480(우리벤처파트너스㈜ IR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가.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 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이하, "벤처파트너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외국법인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총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지주 주식수와 지주 주식의 본건 포괄적 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 다.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이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되며, 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라.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환(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주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상임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L.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지주)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과세

- 가. 본건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
- 나.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주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2024 년 2 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이며, 상임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즉,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Ⅱ.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가.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외국법인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벤처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는 벤처파트너스 주식 1 주당 가액입니다.
- 다.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중 적은 금액이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되며, 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라.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를 통해서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벤처파트너스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상임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L.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벤처파트너스)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 및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과세

- 가.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위 제 1 항 참조)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나.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를 통해서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벤처파트너스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2024 년 2 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이며, 상임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즉,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 벤처파트너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